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9. 9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. 8. 25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0. 8. 26.
- 다. 상정일자 : 제243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(2020. 9. 9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건축과장

1) 제안이유

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.

2) 주요 내용

- 가. 목적,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등 규정(안 제1조~안 제6조)
- 나.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규정(안 제7조~안 제11조)
- 다.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(안 제12조~안 제23조)
- 라.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규정(안 제24조~안 제25조)
- 마. 관계기관의 협력 및 교육 홍보 등(안 제26조~안 제29조)

3. 검토의견(신준호 전문위원)

1) 조례 제정 배경

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정(2016.2.3.)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임.

2) 주요 조문 검토

- 본 제정조례의 구조적 체계는 총칙 6개, 본칙 23개, 부칙 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. 안 제1조에서 안 제6조에는 조례의 목적, 공공디자인의 정의, 구청장의 책무와 주민 등의 참여,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공공디자인의 기본 원칙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7조에서 안 제11조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,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·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12조에서 안 제23조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, 운영과 심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24조~안 제29조는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 및 학술기관·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과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교육·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3) 종합 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제6조,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별도로 수립·시행하고, 필요한 자원 확충과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, 심의 및 조정 기능의 위원회를 두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

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법령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였음.

- 그 동안 “공공디자인”은 학계 및 업계에서 통일된 정의 없이 일반적으로 “공공장소의 여러 장비·장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꾸미는 일⁴⁾”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음.
- 기존 「마포구 도시디자인 조례」에서도 도시경관의 중점을 둔 도시 발전 보전 수준의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.
- 하지만, 법 제2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을 “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지방공기업, 공공기관이 조성·제작·설치·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한 디자인의 행위 및 결과물”로 규정함에 따라
- 제정 조례안을 통하여 디자인을 “매체” 중심으로 이해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사전구상 작업을 문화적 패러다임과 공간·시설·물품과 같은 산업적 패러다임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이미지 개선과 지역관광 활성화 등에 발전을 기대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보임.
- 다만, 법률이 제정된 날을 보았을 때, 조례 제정의 시의성은 다소 미흡해 보이므로, 향후,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에 있어서 좀 더 발빠른 문화적·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하여 조화로운 도시환경 조성 및 각종 공공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임.

4) 김소라(2009), “공공미술과 공공디자인, 그리고 도시”. 대한건축학회 네이버 지식백과 등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